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하이브리드) 개정 안내

항상 저희 BC카드를 이용해주시는 고객님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신용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된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하이브리드)』의 내용이 2024.10.17.일자로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하이브리드)』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유효기한 및 재발급) ① ~ ③ (생략) ④ 갱신 또는 대체발급, 거절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는 회원은 카드사가 갱신 또는 대체발급, 거절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회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모바일 메시지 서비스의 경우 회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며, 데이터 비용 발생사실 등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효하게 전달되지 못한 경우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등)로 대체전송됩니다. 이하 같습니다.),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발급·거절예정사실과 2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린 후 해당 기간 내에 그 회원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없어 묵시적 동의를 받은 경우 새로운 유효기한이 기재된 카드를 갱신 또는 대체발급하거나, 갱신 또는 대체발급이 거절됩니다.	제4조(유효기한 및 재발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는 회원은 카드사가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회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휴대폰 메시지란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등)와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를 통한 모바일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모바일 메시지의 경우 회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데이터 비용 발생사실 등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효하게 전달되지 못한 경우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등)로 대체전송됩니다. 이하 같습니다.),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고, 이의제기 기간 내에 회원으로부터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아 새로운 유효기한이 기재된 카드로 갱신 또는 대체발급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 또는 대체발급의 거절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는 거절이 예상되는 회원에 대하여는 카드사가 거절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회원에게 본 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갱신 또는 대체발급의 거절예정사실과 2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 드립니다. 1.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사실 2. 2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 회원이 제1호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사실
⑤ ~ ⑥ (현행과 같음)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6조(연회비 청구) ① 연회비는 카드사가 발급, 이용대금명세서 발송 등 회원관리비용을 총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기본연회비와 카드별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비용을 총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제휴연회비로 구성됩니다. 기본연회비는 회원별 혹은 카드별로, 제휴연회비는 카드별로 청구됩니다. ② ~ ⑤ (생략)	제6조(연회비 청구) ① 연회비는 카드사가 발급, 이용대금명세서 발송 및 회원관리시스템 유지 등 회원관리비용을 총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기본연회비와 카드별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비용을 총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제휴연회비로 구성됩니다. 기본연회비는 회원별 혹은 카드별로, 제휴연회비는 카드별로 청구됩니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의3(카드의 해지) ① ~ ② (생략)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사유로 카드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원은 즉시 카드를 반납하고, 카드사는 그날까지의 채무 전액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7조의3(카드의 해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사유로 카드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원은 즉시 카드를 폐기하고 , 카드사는 그날까지의 채무 전액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카드의 이용한도) ① ~ ④ (생략) ⑤ 제3항에 따라 이용한도를 감액하는 경우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⑥ (생략)	제10조(카드의 이용한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에 따라 이용한도를 감액하는 경우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 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팩스 (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포인트 및 기타 서비스) ① 카드사는 카드사가 정한 가맹점에서 회원이 카드를 사용할 경우 결제 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가치를 포인트 등으로 적립하여 드립니다. 또한, 회원이 카드를 해지한 경우라도 잔여포인트는 포인트 유효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하나, 회원이 개인정보삭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카드사는 회원이 탈퇴(회원의 유효한 카드가 없어 회원자격이 상실된 상태)나 개인정보삭제를 요청한 경우 탈퇴 또는 삭제 전 잔여포인트 소멸기간 및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안내 하여야 합니다. 다만, 카드사의 개인정보유출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기타 금융 관계법 위반으로 인한 탈퇴나 개인정보삭제 요청인 경우, 해당 카드사는 잔여포인트 가치에 상응하는 별도의 보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제11조(포인트 및 기타 서비스) ① 카드사는 카드사가 정한 가맹점에서 회원이 카드를 사용할 경우 결제 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가치를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으로 적립 또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현행

- ② (생략)
- ③ 제2항의 경우 카드는 회원의 포인트 사용비율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 ④ ~ ⑤ (생략)
- ⑥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 변경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따라 서면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폰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부터는 서면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폰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매월 고지하여 드립니다.

- ⑦ ~ ⑩ (생략)
- ⑪ 상속인금융거래 조화신청 등을 통해 카드사가 피상속인의 사망사실 등을 알게 된 경우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이 보유한 포인트액, 포인트 상속방법 등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등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10영업일 이내에 안내해야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연고가 없는 등 카드사가 정당한 사유로 상속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⑫ (생략)
 <신설>

제12조(대금결제)

- ① ~ ④ (생략)
- ⑤ 제4항의 ‘연체이자율’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약정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일시불 거래를 연체한 경우 : 거래 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 금리
 무이자 할부 거래를 연체한 경우 :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 금리
 그 외의 경우 : <「상법」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 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

⑥ ~ ⑮ (생략)
 <신설>

개정(안)

- ② (현행과 같음)
- ③ 제2항의 경우 카드는 회원의 포인트 사용비율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이 월별한도까지 도달한 이후 회원이 카드결제를 취소하는 경우, 결제 취소로 적립한도가 복원되기 이전에 카드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은 취소내역을 반영하여 월별한도 내에서 정산하여 제공합니다.**

- ④ ~ ⑤ (현행과 같음)
- ⑥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 변경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따라 서면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폰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중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부터는 서면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폰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중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매월 고지하여 드립니다.

- ⑦ ~ ⑩ (현행과 같음)
- ⑪ 상속인금융거래 조화신청 등을 통해 카드사가 피상속인의 사망사실 등을 알게 된 경우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이 보유한 포인트액, 포인트 상속방법 등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등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10영업일 이내에 안내해야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연고가 없는 등 카드사가 정당한 사유로 상속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⑫ (현행과 같음)
- ⑬ **회원이 카드를 해지한 경우라도 잔여 포인트는 포인트 유효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하나, 회원이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카드사는 회원이 탈퇴(회원의 유효한 카드가 없어 회원자격을 상실된 상태)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한 경우 탈퇴 또는 삭제 전 잔여 포인트 소멸기간 및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다만,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기타 금융 관계법 위반으로 인한 탈퇴나 개인정보 삭제 요청인 경우, 해당 카드는 잔여 포인트의 가치에 상응하는 별도의 보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제12조(대금결제)

- ① ~ ④ (현행과 같음)
- ⑤ 제4항의 ‘연체이자율’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약정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카드사는 원금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존 약정에 따른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시불 거래를 연체한 경우 : 거래 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 금리
 무이자 할부 거래를 연체한 경우 :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 금리
 그 외의 경우 : <「상법」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 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

- ⑥ ~ ⑮ (현행과 같음)
- ⑯ **카드사는 이용대금명세서(우편,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등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다만, 회원이 본 항에서 정하는 방법 중 특정 방법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⑰ **제16항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는 회원이 이용대금명세서를 제공 받는 대신 직접 수시열람할 것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따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회원이 선택하는 시점에 이용대금명세서 열람 방법, 이용대금명세서에 이 약관상 안내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및 이용대금명세서 수시열람 선택시에도 이 약관상 이용대금명세서로 통지하도록 한 사항은 서면, 전자우편, 팩스, 휴대폰 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별도 안내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현행

개정(안)

제14조 (기한이익의 상실)

① ~ ③ (생략)

〈신설〉

〈신설〉

④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회원이 카드사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카드사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카드사가 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이자·지연배상금을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카드사가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 때부터 부활됩니다.

제24조(변경승인 등)

① (생략)

② 카드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원에게 변경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즉시)까지 홈페이지 게시,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3개월 이전부터 매월 알려드립니다.

③ ~ ④ (생략)

⑤ 카드사의 사정에 따라 회원의 이용대금명세서 수령 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동 수령방법 변경과 관련된 제반의 사항도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25조(경과 조치)

① ~ ③ (생략)

④ 제24조 제5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신규 가입한 회원에게 적용합니다.

⑤ ~ ⑩ (생략)

제14조 (기한이익의 상실)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카드사에 대한 채무의 원금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연체 등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합니다) 및 동법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카드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통지가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회원에게 도달한 경우 회원은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되, 다만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0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회원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⑤ 카드사가 제4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를 하는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 및 동법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통지 내용, 통지 방법 및 예외사유 등 제반 규정을 따릅니다.

⑥ 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회원이 카드사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카드사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카드사가 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이자·지연배상금을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카드사가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 때부터 부활됩니다.

제24조(변경승인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카드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원에게 변경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즉시)까지 홈페이지 게시,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3개월 이전부터 매월 알려드립니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카드사의 사정에 따라 회원의 이용대금명세서 수령 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변경 대상 회원에게 우편, 전자우편, 휴대폰 문자메시지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변경예정일로부터 1월 전까지 개별 통지를 하여야 하고, 통지 수령 후 이의제기 기간 내에 회원으로부터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동 회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용대금명세서의 수령 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이용대금명세서 수령방법의 변경(변경예정 수령방법, 변경예정일자 포함)
2. 통지 수령 후 2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회원이 제1호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사실
3. 이의제기기간을 초과한 이후에도 회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이용대금명세서 수령방법 변경이 가능하다는 사실 및 변경절차에 관한 안내

제25조(경과 조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2조제16항, 제23조제17항 및 제24조제5항은 2025년 3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⑤ ~ ⑩ (현행과 같음)

※ 시행일 : 2024.10.17.일

※ 본 약관의 경우 비씨카드와 제휴한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KDB산업은행 고객 대상 후불교통이용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제휴카드 발급고객에게 안내드립니다.

※ 본 약관 개정에 따라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하이브리드)』제24조 ①항 1호에 의거 변경된 약관을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 본 약관은 신규/기존 고객님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 이 약관의 개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약관 개정 게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이 변경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